2023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윤한솔	871126-*****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	류			
종류	사업자반	사업자번호		증권번호		자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종피보험자2((수익자)	종피보험자3(수익자)	
	주식회사 케이ㅂ	손해보험	(무)LIG헬스케어	건강보험			
보장성	202-81-48	370	200953**	***	871126-*****	윤한솔	870,276
	삼성화재해상보	.험(주)	해외여행	보험			
보장성	202-81-45	617	823027**	***	871126-*****	윤한솔	39,800
	인별합계금액					910,076	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희경	860705-*****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	류			
종류	사업자번호		증권번호		주피보험	자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종피보험자2((수익자)	종피보험자3(수익자)	
	메리츠화재해상보	험주식회사	(무) 알파Plus보장	당보험1410			
보장성	116-81-03	752	606596**	***	860705-*****	고희경	718,830
	에이아이에이생명보	브럼 주식회사	무) 뉴원스	-톱 3			
보장성	711-87-00	663	253208**	***	860705-*****	고희경	286,560
	인별합계금액				1,005,390		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윤한솔	871126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8-95-00*	서****	일반	12,200
0-23-00*	열****	일반	14,800
6-69-63*	안****	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	15,000
4-29-01*	지 ****	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	37,0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27,0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52,00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79,0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3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희경	860705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0-03-21*	해****	일반	4,400
6-90-26*	해****	일반	35,100
9-90-01*	예****	일반	14,5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54,0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54,0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4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윤한솔	871126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구분	일반	전통시장분	대중교통이용분	도서공연비이용분	합계금액
2023년 합계	35,320,642	1,020,900	155,200	407,336	36,904,078
1월~3월	13,650,224	308,000	2,700	120,040	14,080,964
4월~12월	21,670,418	712,900	152,500	287,296	22,823,114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120-81-54231	롯데카드 주식회사	일반	18,406,894
신용카드	120-81-54231	롯데카드 주식회사	전통시장	368,900
신용카드	120-81-54231	롯데카드 주식회사	대중교통	144,300
신용카드	120-81-54231	롯데카드 주식회사	도서공연등	255,066
신용카드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일반	9,024,090
신용카드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전통시장	364,000
신용카드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대중교통	2,700
신용카드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도서공연등	54,210
신용카드	102-81-14717	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	일반	206,200
신용카드	102-81-14717	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	도서공연등	98,060
신용카드	101-86-61717	(주) KB국민카드	일반	7,683,458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윤한솔	871126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101-86-61717	(주) KB국민카드	전통시장	288,000
신용카드	101-86-61717	(주) KB국민카드	대중교통	8,200
신용카드	101-86-61717	(주) KB국민카드	도서공연등	0
인별합	계금액			36,904,078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
받으시기 바랍니다.

-6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희경	860705-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구분	일반	전통시장분	대중교통이용분	도서공연비이용분	합계금액
2023년 합계	10,500,310	330,000	1,126,000	0	11,956,310
1월~3월	0	0	6,450	0	6,450
4월~12월	10,500,310	330,000	1,119,550	0	11,949,86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대중교통	6,450
신용카드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	17,920
신용카드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전통시장	0
신용카드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대중교통	0
신용카드	213-86-15419	현대카드주식회사	일반	10,482,390
신용카드	213-86-15419	현대카드주식회사	전통시장	330,000
신용카드	213-86-15419	현대카드주식회사	대중교통	1,119,550
인별합	계금액			11,956,310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가수하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들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박규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윤한솔	871126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3년 합계	8,257,057	5,450	0	52,000	8,314,507
1월~3월	717,217	5,450	0	0	722,667
4월~12월	7,539,840	0	0	52,000	7,591,84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524-86-01528	네이버파이낸셜 주식 회사	일반	16,527
직불카드 등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일반	8,235,380
직불카드 등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전통시장	5,450
직불카드 등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도서공연등	52,000
직불카드 등	527-88-00686	주식회사 카카오페이	일반	5,050
직불카드 등	101-86-61717	(주) KB국민카드	일반	100
인	별합계금액			8,314,507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시 사용내역과 가수하자로가 다른 경우 시용카드 사업자 들에게 '사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희경	860705-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3년 합계	2,637,463	24,000	391,300	0	3,052,763
1월~3월	1,561,160	24,000	318,900	0	1,904,060
4월~12월	1,076,303	0	72,400	0	1,148,703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524-86-01528	네이버파이낸셜 주식 회사	일반	1,563
직불카드 등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일반	1,954,960
직불카드 등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전통시장	24,000
직불카드 등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대중교통	0
직불카드 등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	386,680
직불카드 등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전통시장	0
직불카드 등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대중교통	391,300
직불카드 등	375-88-00197	주식회사 카카오뱅크	일반	294,260
인	별합계금액		3,052,763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윤한솔	871126-*****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구분	일반	전통시장분	대중교통이용분	도서공연비이용분	주택임차료 거래	합계금액
2023년 합계	4,576,058	0	16,000	149,173	0	4,741,231
1월~3월	2,018,515	0	0	0	0	2,018,515
4월~12월	2,557,543	0	16,000	149,173	0	2,722,716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-10-
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>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/발급거부 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- 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윤한솔	871126-*****		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

(단위:원)

78	종류	01월	02월	03월	04월	고레디사크에
구분	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		173,310	687,306	1,157,899	239,610	
현금영수증 일반거래	일반거래	218,525	124,710	456,399	649,350	-
		269,750	176,745	91,640	330,814	
	현금영수증 대중교통거래	0	0	0	0	
현금영수증		0	0	0	0	16,000
		0	16,000	0	0	
현금영수증	도서.공연비등거 래	0	0	0	6,050	
		6,050	0	0	3,459	149,173
		8,114	100	0	125,400	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-11-
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>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/발급거부 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- 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■ 차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윤한솔	871126-*****	

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

(단위:원)

취급기관 (사업자번호)	대출종류 (상품명)	최초차입일 최종상환 예정일	상환 주택 저당권 기간 취득일 설정일		저당권 설정일	연간합계액	소득공제 대상액
(사업사인모)	(영급명)	차입금	고정금리 차입금	비거치식 상환차입금	당해년 원금상환액	" .	내장백
(주) 국민은행 (201-81-68693)	해당없음 (FOR YOU 장기대 출 (주택구입자금	2016-01-19 2046-01-19	30년	2016-01-19	2016-01-19	5,186,162	5,186,162
(201-01-00093)	눌 (구택구합자급))	0	0	0	0	. ,	- ,

- 1. 공제 대상: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,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)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(2013.12.31. 이전은 3억원 이하, 2014.1.1.~2018.12.31. 4억원)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※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, 본인 명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임
- 2. 공제한도 :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,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,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300만원, 500만원, 600만원, 1000만원, 1500만원, 1800만원 한도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[기부금]

(조회기간 : 2023년 01~12월)

■ 기부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고희경	860705-*****		

■ 기부금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단체명	기부유형	기부금액 합계	공제대상 기부금액	기부장려금 신청금액
102-82-07606	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	종교단체외일반(지정)기부금	90,000	90,000	0
인별합계금액					90,000

- ※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.
- 1. 공제 대상 :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
- 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정치자금기부금'과 '우리사주조합기부금'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-13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